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13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24호, 2023.6.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3년 7월 13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일부개정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 (별표2) 중 차-113란 다음에 차-11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별표2)

| 분류번호 및 코드 | |
|-----------|---------|
| 차-114 | (U1140) |

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중 차-100 타액선 도관
 세정술[도관당]란 다음에 차-114 골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분류번호 | 코드 | 분 류 | 점 수 |
|-------|-------|---|----------|
| | |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| |
| 차-114 | U1140 | 골이식술 Bone Graft 주 : “제10장 [산정지침] (4)”에도 불구하고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. | 1,038.10 |

부 칙

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